

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



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

→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?

»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.

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, ②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·이행되어 있지 않을 때 처벌받습니다.(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)

1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

우리 업종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
→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(사망사고) 사례는 무엇인가요?

»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종에서 최근 5년('19~'23년)간 전체 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
: 폭발·파열 4, 질식 2, 떨어짐 1, 부딪힘 1

폭발·파열

'22.8. 선저폐수(선박 밀바닥에 고이는 유성혼합물) 저장탱크 부근에서 화기작업 중 폭발하여 사망



사고를 예방하려면?

- 화재·폭발 위험장소에서 화기작업 금지
- 작업장 내 위험물 보관 현황 파악
- 가연물질 인근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

질식

'20.8. 정화조 청소작업을 위해 지하병커로 내려가던 중 질식하여 사망



사고를 예방하려면?

- 정화조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
-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
- 정화조 외부에 작업상황 감시인 배치
- 비상 대피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, 사다리, 섬유로프 등 비치

떨어짐

'22.5. 퇴비저장동 지붕 보수작업을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어 떨어져 사망



사고를 예방하려면?

- 취약한 지붕재, 채광창 위로 이동 금지
-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에 폭 30cm 이상의 작업 통로용 발판 설치
- 안전대 착용,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

※ 해당 사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례 위주로 작성(경미한 부상 사례는 제외)

이것만은 기본!

- ①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실시하세요.
- ② 업무시작 전에는 꼭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**준수(주의)사항**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세요.
- ③ 위험한 곳에는 꼭 **안전표지판, 안전스티커**를 설치·부착하세요.
- ④ 직원 중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**담당자를 지정**하여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하세요.
- ⑤ 상·하수도 맨홀, 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 작업 시 **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**를 꼭 착용하세요.



업종별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
(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)

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컨설팅 신청

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!

※ 동 내용은 중소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'22년 배포한 가이드(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QR코드 참고)를 간소화하여 작성한 자료이며, 상세한 법적의무사항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사업주 핵심 의무사항(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)

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

- ▶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의무사항 총 15가지 중 **핵심 의무사항을 안내**하니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**할 수 있는 것부터**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!!
 - ▶ 안전보건관리체계란?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·이행하고,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.
- ▶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아래 핵심 의무사항을 **최소 반기 1회는 체크해보세요!!**

핵심 의무사항 하나!

▶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.

- ▶ **예시** ◀ 아래는 예시임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립 가능
(방침) “우리 작업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,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.”
(목표) “질식·떨어짐 등 위험 사고 00건 감소”, “작업 전 환기 및 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, 공기호흡기 등) 착용하기” 등
(공유·전파) 작업 전 주의사항 안내 시, 교육 등을 통해 수시로 사업주의 의지를 알리고 작업 장소 등에 게시

우리 사업장은?

예	아니오

핵심 의무사항 둘!

▶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합니다.

- 상시근로자 20~50인 미만 사업장 중 하수, 환경, 폐기업, 제조업, 임업 5개 업종에 한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(권고사항) 다만, 법적으로 **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·담당하는 인력**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**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** 하는 것이 **바람직**합니다. (겸직 가능, 사업주(대표)가 수행 가능)
 - ▶ **예시** 직원 중 선임(반장급) 직원을 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 직원으로 지정

우리 사업장은?

예	아니오

핵심 의무사항 셋!

▶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(비용)을 사용합니다.

-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 예산(비용)을 편성하여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.
- 사전에 지출할 계획이 없더라도 안전용품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면 됩니다.
 - ▶ **예시**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화, 안전대,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), 산소농도·유해가스 농도 측정기, 환기팬, 구명보트 등 구입, 안전표지판(작업자 외 출입금지 등) 설치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등

우리 사업장은?

예	아니오

핵심 의무사항 넷!

▶ 우리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(위험성평가)을 합니다.

- 부상 등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(아차사고) 보고 등 근로자 안전제안제도를 운영(건의함, 게시판 등 설치)하고,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.
- 위험성평가 방법, 서식 등은 위험성평가 시스템(오른쪽 QR 참조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- ▶ **예시** 사전 교육, 작업 시작 전 집합시간 등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, 폐수·정화조 수거 작업 방법 및 주의사항, 수거 차량 운행 시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장소 등에 게시
 - ▶ **유해·위험요인 예시**
 - ⊙ 상·하수도 맨홀, 하수·폐수처리장 등 유지 점검·보수, 정화조 청소 등 작업 전 환기 미실시,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, 가연성 증기 미제거 등에 따른 질식, 화재·폭발 위험
 - ⊙ 작업 중에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비 착용 없이 들어갈 경우 질식 위험
 - ⊙ 하수처리장 개구부, 폐수나 정화조 수거 작업 시 사용하는 발판, 사다리 등에서 떨어짐 위험
 - ⊙ 물가·이물질이 있는 바닥이나 정화조 호스에 걸려 넘어짐 위험
 - ⊙ 작업 중 인접한 작업자와 차량 및 수거설비 부딪힘 위험

우리 사업장은?

예	아니오



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안내

핵심 의무사항 다섯!

▶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만들고,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.

- ▶ **예시** 화재 등 비상대응 매뉴얼(비상대피도, 비상연락망, 이송 병원 등) 마련, 이전에 발생한 사고별 재발방지대책 마련

우리 사업장은?

예	아니오